Jisung Horizon Newsletter

June 2009 Vol.2. No.6

01 법률칼럼

■ 발전차액지원지도. 폐지냐, 존치냐?(권용숙 변호사)

04 Vietnam LIVE!

• 베트남 투자법과 기업법 개정안 (한승혁 호주변호사)

06 열려라 중국

중국 반독점법상 경영자 신고 관련 상무부 규정
 초안에 관하여(정철 변호사)

09 생생러시아

러시아 법상 도산절차(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11 주목! 이 판례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건(대법원 2009년 5월 28일 선고 2009도988 판결)

19 최신법령

- 소규모회사에 관한 특칙 및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 등
-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통합 등
-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세제도 폐지 등
-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규정 삭제 등

21 지평지성 소식

- 지평지성, '아름다운 가게' 개최 예정
- 지평지성, 서울지방변호사 회장기 축구대회 페 어플레이상 수상

24 업무동향

- 지평지성, 안철수 연구소와 국내 최초 법률자문 정보보호컨설팅 제공
- 지평지성, 포스코특수강의 베트남 프로젝트 법 률자문 제공
- 강성 대표변호사, 녹색성장위원회 고문변호사 로 위촉

28 영입인사

- 송성욱 미국변호사
- Kent Wong 호주·뉴질랜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 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 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 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 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 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 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률칼럼)

발전차액지원지도. 폐지냐, 존치냐?



권용숙 변호사

2008년 한때 배럴당 약 150달러를 웃돌아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제유가는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2월 배럴당 40달러 이하로 하락했으나, 최근 전세계적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다시 배럴당 60달러 후반까지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자연스레 신재생에너지가 재차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신재생에너지가 산업계 및 행정기관 그리고 심지어 법조계 사이에서 자주 언급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은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 법의 한 축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 바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이슈가 해당 업체 및 관련 산업 전반의 부침 내지 흥망성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이하 "신 재생에너지법") 소정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의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의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법 제17조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성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인바,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의무확보수단을 요하지 않으므로 행정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정가격을 보장받으므로 경쟁촉진 및 비용절

감에 소홀해 질 수 있고, 공급규모의 예측이 어려우며 재정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의무할당제도(RPS)는 주요 발전사업자에 대해 그 전력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단점을 장점으로, 장점을 단점으로 갖습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도입 및 실행 중에 있으나 2011년 말에 폐지되고, 그 자리를 의무할당제도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정부 제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참조).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발전원(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등) 별로 기준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실제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장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즉, 발전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03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인데,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 발전원 중 태양광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최대 수혜자임이 알려지게 되자 태양광으로의 급격한 투자 쏠림 현상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2008년도에 총 513억원의 발전차액지원 예산보다 133%증가하여 집행된 1,197억원의 발전차액지원금 중에서 태양광발전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2009년에도 예산 초과 지급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바,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예산 중 태양광에의 투입비중은 과반수에 이르는 반면, 태양광발전의 보급기여도는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예상을 초과한 재정부담까지 가중되자 정부는 2008년 및 금년 4월말 2차례에 걸쳐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수정을 가하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태양광발전에 대해 연도별 발전차액 한계용량을 새롭게설정하여 금년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로 나누었고, 신규로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적용설비 접수증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추가하게 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아예 발전차액지원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대신 앞서 언급한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갑작스런 제도 수정으로 인해 태양광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사실상 차단됨으로써 이미 투자가 진행중이거나 신규로 계획중인 태양광발전사업이 모두 좌초되게 되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개정한 금번 고시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지점은 주로 정부가 이전에 고시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임의로 축소함으로써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고, 발전설비의 설치기간도 무리하게 단기로 제한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초부터 태양광발전차액지원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총 500MW(누적기준)로 지원한계용량이 주어져 있었고, 2008년까지 이미 300MW의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잔여용량은 200MW에 불과한 상태라는 점 및 정부가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할 것이라는 점 또한 정부가 금년에 고시를 개정하기 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음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어느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행정청은 발전차액지원과 같은 급부행정 내지 공급행정 영역에 있어 질서행정 내지 규제행정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필자는 위와 같은 법적 쟁송에 앞서, 2011년을 마지막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한다는 정책방향이 타당한 것인지, 또 2011년까지 지원한계용량을 총 500MW로 한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재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비판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상당함을 알면서도, 또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해 보이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대폭 수정을 고려하는 데에는 단순한 재정부담 이상의 정책적고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발전차액제도의 재평가를 위해서는, 왜 정부가 장점이 아주 많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선진 신재생에너지 개발국가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도를 어떻게 채택하고 있고,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국내 태양광산업의 기반조성 및 우리나라의 앞선 반도체기술과 태양광사업의 접목을 위해 정부가 유지 또는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위와같은 과제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재연장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양 제도를 연계내지 병행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Vietnam LIVE)

베트남 투자법과 기업법 개정안



한승혁 호주변호사

2006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투자법에 따라 외국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하가서(Investment Certificate)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 투자허가서는 '사업자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법인설립'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따로 법인설립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며, 특정 투자프로젝트 없이 법인만 우선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착오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현행 투자법의 개정안이 검토 중에 있는데, 이전까지의 투자허가서에 대한 '이중 역할 방식제'를 폐지하고, 대신 투자허가서는 기존의 투자허가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기관에서 별도로 발급 하는 '이원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절차의 간소화에 역행하는 개정안으로, 신규 외국투자자뿐만이 아닌 기존 외국투자자까지도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발급 받아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종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외국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기업법은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외국투자법인(구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투자법인)의 경우, 2008년 6월 30일까지 '재등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등록'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투자기업은 기존투자허가서에 따른 사업행위 이외의 추가적 사업 영위가 불가하며, 투자허가서 상의 사업 허용기간의 연장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 '재등록' 기간을 놓친 많은 투자기업들이 베트남 내에서의 투자사업의 확대 또는 추가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왔습니다.

현행 기업법과 투자법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이후 설립된 투자법인의 경우에도, 그 사

업범위가 투자허가서 상에 특정되어 있고 투자법인의 사업행위는 이 사업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제조업으로 투자허가를 취득한 경우, 신발제조를 위해 필요한 기계와 설비 및 그 밖의 신발제조에 필요한 소재를 수입하거나 베트남 내에서 구입하는 행위와 제조된 신발을 수출 또는 내수용으로 판매(수출자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투자기업 제외)하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히 신발제조업의 사업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업행위 '범위' 밖의 사업행위,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수출입, 유통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 신청 및 허가를 우선 취득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에 정한 벌금이 부과되며, 그 과오가 중할 경우 법인장 (legal representative)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현행 기업법의 개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등록' 기한을 삭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대로 확정될 경우, '재등록' 기한을 지키지 못 해 베트남 내에서의 사업 확대나 추가적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었던 투자기업들에게는 희 소식이 될 것입니다.

2006년 7월 1일 시행 이후 약 3년 만에 이루어지는 투자법과 기업법의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고객사와 그 밖에 관심 있는 분들께 따로 정리하여 배포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신청은 법무법인 지평지성 홍보기획팀 (email: <u>master@js-horizon.com</u>)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JS Horizon]

(열려라 중국)

중국 반독점법상 경영자 신고 관련 상무부 규정 초안에 관하여



정철 변호시

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 관련 신규정의 제정 작업

작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반독점법상의 경영자집중 신고와 관련하여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이하 '신고표준규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신고절차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표준규정도 여전히 신고 절차 및 심사 절차에 대해서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경영자집중 신고와 관련한 5개의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관한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1) "경영자집중 신고 잠행 방법(의견수렴안)"[经营者集中申报暂行办法(征求意见稿)], (2) "경영자집중심사잠행방법(초안)"[经营者集中审查暂行办法(草案)]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경영자집중신고잠행방법(의견수렴안)」(이하 '신고방법')의 주요내용

「신고방법」은 경영자집중의 신고의 수리와 심사업무가 상무부의 위임을 받아 상무부 반독점국이 수행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조).

「신고방법」은 경영자집중의 유형을 판단할 요소 중 하나인 지배권 취득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른 경영자의 50% 이상의 표결권이 있는 지분 또는 자산 취득
- 다른 경영자의 50% 이상의 표결권이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기타 경영자의 자산 또는 지분 취득 또는 계약 등 방식을 통해 기타 경영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사회 구성원과 핵심 관리인원의 임명, 재무예산, 경영판매, 가격 책정, 중대한 투자 또는 기타 중요한 관리와 경영정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2 이상의 경영자가 공동으로 신규 기업을 신설할 경우 반독점법 제20조의 경영자 집중으로 간주됨

또한 경영자집중 신고 여부를 판단할 요소인 "영업액"의 의미에 관하여 반독점법 또는 신고표준규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신고방법」이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 영업의 판단기준은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매수자의 소재지가 중국 국내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영업액은 제외합니다. 영업액에는 관련 경영자가 전 회계연도 내에 상품판매와 서비스 제공으로 취득한 수입을 포함하고 각종 세금 및 부가세를 공제하지만 기업소득세와 증치세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제4조). 영업액을 산정에는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영업액도 합산하나, 계열회사 사이의 영업액은 제외합니다(제5조). 만일 인수대상기업의 일부 지분 또는 자산을 인수할 경우에는 매각자는 경영자집중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영업액만 계산합니다(제7조).

동일한 경영자 간에 1년 내에 연속으로 신고표준규정 제3조에 규정한 신고표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영자집중을 진행하였을 경우 한번의 경영자집중으로 간주하고 경영자 집중의 발생시점은 마지막 거래를 시점으로 계산하며 동 경영자 집중의 영업액은 여러 차례 거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1년 이내란" 제1차 경영자집중 거래가 완성된 날부터 마지막 경영자집중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를 말합니다.

「신고방법」에 따르면 경영자집중이 신고표준규정 제3조에 규정한 신고표준에 미달되었더라도 사실과 증거 수집 결과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발생 가능할 경우 상무부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는 자진하여 경영자집중을 신고할 수 있고 상무부는 필요에 따라 수리할 수 있습니다(제8조).

신고의 주체는 합병방식으로 경영자집중을 할 경우 합병에 참여하는 각 경영자이고, 기타 방식으로 경영자집중을 하는 경우 통제권 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입니다(제10 조).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는 공식적으로 경영자집중을 신고하기 이전에 관련 문제에 대

해 상무부에 상담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9조).

상무부는 제출한 자료가 미비할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서류를 보충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류를 전부 제출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경영자집중에 대해 초보적 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영자집중심사잠행방법(초안)」(이하 '심사방법')의 주요 내용

「신고방법」이 신고 단계에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사방법」은 신고 이후 상무부 반독점국 내부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의 심사결정 이전에 경영자는 경영자집중 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시 서면신청과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신고 의무자가 경영자집중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무부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제3조).

심사 과정 중에 상무부는 신고의무자에게 의견 진술과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고 신고의 무자는 편지, 팩스 등 방식으로 서면 진술과 해명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5조). 경영 자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들은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효과를 제거하고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자산 또는 영업의 분리, 기초시설의 개방, 핵심 기술의 사용허가 등 경영자집중 방안을 조정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제11조).

경영자집중 신고를 받고 심사하는 과정 중에 관련 정부부서, 산업협회, 경영자, 소비자 등업체와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제6조). 상무부는 자체 결정 또는 관련 업체 또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고 증거수집 및 의견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제7조). 상무부에서 심층심사를 결정하고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 및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영자집중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에게 서면 해명 기회를 부여합니다(제10조).

초보적 심사를 거쳐 상무부는 심층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심층 심사를 진행한다는 심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가 심층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경우 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심사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경영자들은 경영자집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9조).

심층 심사단계에서 상무부는 경영자집중을 금지 또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합니다. 금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경우 상무부는 경영자집중이 경쟁저해성을 감소시킬 제한 성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한성조건의 시행 상황에 대해 감독합니다(제14조, 제15조).

JS Horizon

(생생 러시아)

러시아 법상 도산절차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관련링크 : 러시아 회사의 임의청산 절차 (지평지성 뉴스레터 2008. 12월호)

지난 「러시아 회사의 임의청산 절차」에 이어서 앞으로 3회에 걸쳐서 러시아 회사의 도산절차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회에서는 먼저 도산관계법상 도산절차 개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산절차 개시의 요건

러시아 도산절차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불능(도산)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도산법')은 법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규율을 하고 있고, 국유재산기업, 기관, 정당, 종교단체의 도산절차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도산법은 도산을 금전채무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 전액을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지급금 납부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사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무나 강제지급금 납부의무를 3개월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그 금액이 100,000루블(약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전채무나 강제지급금 납부의무가 10,000루블(약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도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도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고, 도산절차의 개시요건 역시 일반적인 법인의 도산절

차와는 다릅니다.

금전채무에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채무, 부당이득반환채무, 매매대금채무 등 민법상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채무, 지적재산권이용료, 배당금,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개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도산절차 개시 요건에 있어 금전채무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강제지급금 납부의무에는 세금, 수수료, 기타 정부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포함되지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산절차의 개시

도산절차는 상사법원 관할에 속합니다. 도산절차는 채무자 주소지의 상사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개시됩니다. 그리고 도산절차의 개시는 채무자, 채권자 및 관계 당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채무자의 금전채무 및 강제지급금 납부의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이외에도 도살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i) 채무이행지연이 3개월을 초과하여야 하고, (ii) 채권자를 위해 효력이 발생한 법원의결정이 있어야 하며, (iii) 30일 내에 집행관이 채무추심 불가능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나 자영업자는 채무초과상태임이 확인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산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 [JS Horizon]

(주목! 이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건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년 5월 28일 선고 2009도988 판결

1. 서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처벌규정 문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건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2심 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자판하였습니다. 물론 2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어서 심판대상이 달라지기는 했으나, 공소장 변경이된 부분까지 1심에서 아울러 판단하였으므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정반대의 결론을 취한 셈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새로운 관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각심급별 판결의 쟁점을 살펴보면, 건산법 처벌규정 문언의 의미를 획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건산법 조문을 보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논점에 따른 각 판결의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 순차로 봅니다.

- 2. 기초사실 및 대상판결의 요지
- (1) 해석에 다툼이 있는 건산법 조문

문언의 뜻이 문제된 건산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u>발주자, 수급인</u>, 하수급인 또는 <u>이해관계인</u>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u>취득</u>하거나 <u>공여</u>하여서는 아니된다(건산법 제38조의 2)." 건산법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건산법 제95조의2).

건산법은 양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의2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건산법 제98조 제2항).

(2) 쟁점이 된 기초사실 요지

이 사건에서 각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규정에 위반되었는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6인입니다. A건설회사, A건설회사의 상무@, B건설회사, B건설회사의 차장 ®, C건설회사의 팀장 ©, 안전진단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모대학교 교수 D입니다.

공소사실은 이러합니다. A 및 B 건설회사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피고인 @ 및 ⑩, 그리고 건산법 제38조의 2의 "수급인"인 C회사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피고인 ⓒ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수급인을 정하는 평가위원 피고인 D에게 각자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D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 ⑩, ⓒ가 D에게 각자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고 D는 이를 취득한 사건입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건산법위반의 논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① 건산법 제38조의 2 문언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u>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발주자 등')이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스스**로 영득하기로 하는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발주자 등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이 개인적으로 영득하기 위하여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는 처벌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u>
- ② 양벌조항에 의하여 발주자 등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도 건산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건산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발주자 등이 스스로 영득하기로 하는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여하는 행위에 한정되므로, 양벌조항이 적용되는 사용인 등의 행위 역시 객관적으로 보아 발주자 등이 스스로 영득하기로 하는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와 달리 사용인 등이 개인적으로 영득하기 위하여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건산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과 함께 살펴봅니다.

3. 1심 및 2심 판결의 요지

(1) 1심 판결의 요지

건산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1심 법원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전혀 다른 논리를 취하였습니다. 돈을 받은 피고인 D는 건산법 제38조의2 가 규정하는 "발주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물론 공사를 낙찰받은 C건설회사가 "수급인"에 해당한다거나 응찰하였다가 낙찰을 받지 못한 A 및 B 건설회사가 건산법 제38조의 2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 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D가 발주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1심 판결은 이와 같은 문언의 모호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 하였습니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된점,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한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부실시공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8조의 2가 신설된 점, 위 조항 자체의 구조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등 행위주체를 열거한 다음 "이해관계인"이라는 행위주체를 설시한 점에비추어, "이해관계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과 같은 정도로건설산업에 관련이 있는 자로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위 조항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정한 법률적・경제적 이해가 엇갈리는 자로서 최소한 건설산업에 종사하는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교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D를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는 없고, 단순히 하루 정도 설계적격 심의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후 수당 등을 수령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 D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일정한 법률적 · 경제적 이해가 엇갈리는'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평가위원인 피고인 D는 위 법 제38조의 2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의 2의 발주자 및 이해관계인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② 피고인 ⓐ, ⑥에 대하여는 그들이 재물을 제공한 대상이 발주자 및 이해관계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③ 피고인 A, B회사에 대하여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들인 피고인 ⓐ, ⑥가 발주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재물을 제공한 것이 아닌 까닭으로, 각 건산법 제38조의 2, 제95조의 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2심 판결의 요지

2심 법원은 이런 1심 판결을 파기하여 자판하였습니다. 2심 도중 검사는 2차례에 걸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데, 그 중 건산법위반의 점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D에 대하여 건산법 제98조 제2항(양벌규정)에 의율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산법위반의 점에 대한 심판대상이 1심과 2심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 제98조 제2항은 법 제38조의2 금지규정 위반을 전제로 하므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2심의 쟁점에 대하여 1심도 방론으로 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2심 판결의 요지를 봅니다.

법 제38조의2, 제95조의2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8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인'에는 발주자 등 업무주와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이와 같이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으며 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상 비록 타인과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주의 '사용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도3509 판결 참조).

피고인 D가 비록 서울시에 의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그 기간도 단 하루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발주자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은 분명하고 또한 <u>평가위원의 **평가업무**자체는 그 특성상 자신의 전문지식 및 식견에 의하여 자유로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는 발주자 및 서울시의 통제·감독 하에 일정한 제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평가위원인 피고인 이석하는 발주자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u>

결국 2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법 제98조 제2항(양벌규정)을 근거로 건산법위 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4. 쟁점별 검토
- (1) 문제의 소재
- 이 사건에서 문언해석과 관련해 드러난 쟁점은 피고인 D가 법 제38조의 2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법 제98조 제2항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또한 그 이면에는 법 98조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데에 제38조의2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라는 논점이 숨어 있습니다. 쟁 점별로 봅니다.

(2) 피고인 D가 법 제38조의 2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법 제2조에서 모두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습니다. 검사는 애초 평가위원인 피고인 D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 자체에서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면, 그 법의 제정목적, 보호법익,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그 개념을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1심 법원도 이러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해관계인"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과 같은 정도로 건설산업에 관련이 있는 자로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선 피고인 D에게는 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점에서는 2심 법원도 동일하게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의 예를 들어보면 A, B회사가 될 것입니다. 도급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낙찰된 자와 함께 입찰하였다가 탈락된 A, B회사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인 수급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도급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자신의 일정한 법률적·경제적 이해가 엇갈리는 자로서 최소한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법 제38조의 2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낙찰받은 C회사가 자신의 낙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인 낙찰 탈락자 A, B회사에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금품을 제공했다면 법 제95조의 2, 제38조의 2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피고인 D가 법 제98조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2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건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D를 사용인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D의 업무가 발주자로부터 통제·감독을 받므면서 일정한 제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상 평가위원인 피고인 D는 발주자의 '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2심의 판단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위원인 피고인 D는 발주자의 통제·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기보다 개인적식견·전문지식에 따라 자유로이 위임받은 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한기준에 의하여 평가위원이 선정된 후 오히려 발주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평가위원들에게 적격업체 선정업무를 완전히 위임함으로써 평가업무에 대한 지휘·통제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만일 평가위원인 피고인 D를 발주자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볼 때 법 제98조 제2항에 의하여 발주자도 처벌하여야 하는데, 이런 결론이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4) 재물 취득자 및 공여자에게 모두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법 제38조의 2를 해석할 때에, 행위주체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상대방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 중에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위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제공한 주체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견해를 취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6. 28.선고, 2006노2571 판결).

이러한 해석론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평가위원 피고인 D가 이해관계인 또는 발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물을 제공한 ⓐ, ⓑ, ⓒ가 수급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사용인기타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법 제95조의 2, 제38조의 2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심 법원은 이런 논점에 대하여도 판단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위 해석론을 비판하였습니다.

첫째, 위 조항이 신설될 때 제안된 개정법률안 제22조의 2는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95조의 2는 "제2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2.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발주자나 수급인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위주체 및 객체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던 개정법률안은 2005. 4. 20., 같은 달 21. 및 22. 3차례에 걸쳐 열린 법안심사위원회에서 개정법률안 중 행정처분의 소급적용조

항(안 부칙 제2항)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고, 나머지 조항은 별다른 언급 없이 체계(제22조의 2를 제38조의 2로 변경)와 자구만을 수정하여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제95조의 2, 제38조의 2를 해석할 때에도 행위주체 및 객체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여서 해석해야만 위조항의 입법취지 및 연혁에 부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만약 위 고등법원 판결이 취한 해석론처럼 행위의 주체 및 객체 어느 일방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해도 처벌할 수 있다고 풀이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기위하여 발주자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처에게 재물 등을 공여한 경우에, 위 해석론에 의하면 도급을 받기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수급인을 처벌하여야 하는 등, 수급인이처벌받을 수 있는 상대방이 무한정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 해석론은 '가벌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에 대하여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주체, 객체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특정하고 여기에 흡수되지 않는 나머지 행위 주체, 객체들을 "이해관계인"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흡수시킨 뒤 그 범위는 법관의 합리적 해석에 맡기려는 것이 법 제38조의 2의 근본취지라고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행위의 주체 및 객체 양쪽 모두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법 제95조의 2, 제38조의 2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심 법원의 위와 같은 논리는 합리적인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5) 발주자를 위한다는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거나 이익귀속주체가 발주자일 필요가 있는지

검사는 법 제98조 제2항의 양벌규정으로 행위자인 '사용인'을 처벌할 때에 에 '사용인'이 업무주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으로 족하고 '업무주를 위하여' 수수한다 거나 금품수수의 이익귀속주체가 업무주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사용인'에게 '업무주를 위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주관적 의사를 요구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 D가 발주자를 위한다는 의사없이 피고인 D개인을 위하여 금품을수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양벌규정의 문언상 업무주의 '업무에 관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나아가 법 제38 조의2의 금지규정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의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통상의 행정벌에 관한 양벌규정이 기본적 업무에 부수하는 금지의무를 위반한 범칙행위 등을 규율하는 것과 달리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이라는 기본적 업무와는 전혀 별개인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의 취득이라는 형사벌적 범죄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인'이 재물을 취득할 당시에 업무주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거나 재물 취득의 이익귀속 주체가 업무주인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 D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여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건산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과 견해를 달리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입니다. 법 제38조의2에 근거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이 스스로 영득하려고 취득 또는 공여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 제98조에 의하여 처벌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인이 개인적으로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명목으로 공여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발주자 등이 스스로 영득하려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①행위)"와 "사용인 등이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②행위)"는 그 본질, 성격과 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만약 양벌조항을 매개로 삼아①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위 ②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양벌조항은 단순히처벌조항주체를 확장시키는 정도를 넘어 전혀 다른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출하는 셈이 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5. 결론

1심 및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처벌에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심은 피고인 D에게 배임수재, 피고인 ⓐ, ⑥, ⓒ에게는 배임증재가 성립한다고 보았는데, 환송심에서도 이와 같은 결론은 뒤바뀌기 어렵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사처벌규정은 법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법문 제정과정에서 법안 심사 중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법규정 자체에 대한 개정논의는가능할 것입니다.

6. 다운로드 : 대법원 2009년 5월 28일 선고 2009도988 판결 IS Horizon

(최신 법령)

- 1. 소규모회사에 관한 특칙 및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 등
- : 「상법」일부개정(법률 제9746호, 2010. 5. 29. 시행)
 - 1)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를 용이하게 설립할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i) 소규모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의무가 면제되며(법 제292조 단서), (ii) 소규모회사 설립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고(법 제318조 제3항), (iii)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한편 서면에 의한주주총회 결의를 허용하는 등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간소화되며(법 제363조), (iv) 소규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감사 선임 여부는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입니다(법 제409조 제4항 내지 제6항). 이에 따라 소규모회사의 설립절차가 간소화되어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법 제368조의4를 신설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주총회 개최 비용이 절감되어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다운로드 : 「상법」일부개정(법률 제9746호, 2010. 5. 29. 시행)
- 2.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통합 등
- :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정(법률 제9708호, 2009. 8. 23. 시행)
 - 1) 2008년 2월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 통신산업 관련 업무가 그 동안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 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법을 제정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 항을 통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 해졌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2) 다운로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정(법률 제9708호, 2009. 8. 23. 시행)
- 3.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세제도 폐지 등

: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 제9673호, 2009. 5. 21. 시행)

- 1) 동법을 개정하여, 종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규정된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법 제9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 2) 다운로드: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 제9673호, 2009. 5. 21. 시행)
- 4.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규정 삭제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492호, 2009. 5. 13. 시행)

- 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제도의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 3.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i)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가 축소되며(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ii)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시행령 제17조 등은 삭제되고, (iii) 동 시행령 제17조의11을 신설하여 기업집단 현황공시대상 회사 및 분기별 공시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2) 다운로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 21492호, 2009. 5. 13. 시행) Is Horizon

(지평지성 소식)

지평지성, '아름다운 가게' 개최 예정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름다운 가게 서울역점에서 '2009년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가게'를 개최합니다.

"나눔의 정신", "배려의 마음", "행동하는 참여"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 행사에서 지평지성의 변호사와 직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건 가운데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을 모아행사장에서 직접 판매한 다음 수익금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께서도 지평지성의 아름다운 가게에 참여하셔서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게>

- 일시 : 2009. 7. 4.(토) 10시 30분 ~ 18시
- 장소 : 아름다운 가게 서울역점 (서울역 서부역 방향 롯데마트 1층 아래 약도 참조)
- 아름다운 가게 홈페이지 : http://bstore.org







※오시는 길

■지하철

1,4호선 지하철 서울역 1번출구, 오른쪽 2층 롯데마트 정문입구에서 후문 1층 쪽으로 내려오면 매장 위치.

■버스 (일반)

163, 261, 262, 503, 7024, 0015, 0016 구서부역 하차, 정면 롯데마트 후문 1층 로비

JS Horizon

(지평지성 소식)

지평지성, 서울지방변호사 회장기 축구대회 페어플레이상 수상

법무법인 지평지성 축구단은 지난 5월 23일, 토요일, 경기도 용인시 퓨처스리더쉽센터에서 열린 '제5회 서울지방변호사 회장기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평지성을 포함하여 총 9개팀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뤘으며, 서울지방변호사 축구단이 우승을, 지평지성은 5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축구단은 깨끗한 경기매너와 경기운영에 협조적인 태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JS Horizon

(업무동향)

지평지성, 안철수 연구소와 국내 최초 법률자문 정보보호컨설팅 제공

통합보안솔루션 기업인 안철수연구소는 지난 5월 25일,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협력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시 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컨설팅과 법률자문 컨설팅을 결합한 것으로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관련 법령 및 유관 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도록 대상 회사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내 규정 및 보호 시스템을 진단한 후 시정하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여 예방조치를 취하며 정기적인 진단과 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안철수연구소는 고객 회사의 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 진단 및 보안체계의구축,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신속한 대응 등 기술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 제기되는 집단적인 소송에 대해 회사가 응소하는 형태로 분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당해 고객에게 유출사실을 즉시통지할 의무를 신설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법적 의무 및 소송에서의 리스크가 훨씬 커졌습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됨으로써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국내 최초로 발족한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안철수연구소의 개인정보보호 통합컨설팅 서비스는 고객 기업의 안정성과 기업신뢰도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안철수硏, 보안과 법률서비스 결합
- 중앙일보-안철수연구소,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제휴 서비스
- 머니투데이-안硏-지평지성, 법률자문 보안컨설팅 '첫선'

[담당변호사]











최승수 변호사

이은우 변호사

김지연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김범희 변호사

JS Horizon

(업무동향)

지평지성, 포스코특수강의 베트남 프로젝트 법률자문 제공

지난 5월 29일, '포스코특수강이 단독으로 투자신청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총 투자비 6억 2천만불, 연간 생산능력 100만톤 규모의 제강 및 압연공장 프로젝트에 베트남스틸(베트남국영 철강회사)이 지분 참여 의사를 밝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 프로젝트의 모든 법률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서는 6월중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베트남 호치민 시 인근 붕따우성에 준공될 이 공장은 연간 형강 70만톤, 봉강 3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 '한-아세안 정상회담' 앞두고 베트남 투자열기 후끈 아시아경제 - 포스코특수강, 베트남에 제강·압연공장 세운다 파이낸셜뉴스 - 포스코특수강 "베트남에 제강·압연 공장 설립"

[담당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Bui Tran Dang Khoa 베트남변호사

JS Horizon

(업무동향)

강성 대표변호사, 녹색성장위원회 고문변호사로 위촉



(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는 6월 8일 녹색성장위원회 로부터 녹색성장위원회 고문변호사로 위촉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하고 조율하는 기구로서, 사회 가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greengrowth.go.kr
- 녹색성장위원회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위촉장 보기 (Click) 」S Horizon

(영입인사)



송성욱 미국변호사 susong@js-horizon.com

□ 학력사항

- 배명고등학교 제30회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87학번)
-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로스쿨(J.D.)

□ 경력사항

-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1992)
- 산업자원부 사무관(무역국, 통상무역실)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정책국, 독점국)
- AICPA(2000)
-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2001)
- 재정경제부 서기관, 사무관(경제정책국)
- 삼성그룹 삼성생명 경영전략실, 재무전략팀 자산운 용본부
- RG에너지자원자산운용사 투자운용본부장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미국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송성욱 미국변호사입니다.

저는 1992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하여 구 상공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면서 산업, 통상정책, 공정거래정책, 거시경제정책 등 우리나라 경제정책 주요 분 야에서 정책 수립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 중 정부유학생으로 선발 되어 미국 유학 중에는 기업, 금융분야법을 주로 공부하였 습니다.

2003년 재정경제부 서기관으로 퇴직 후에는 삼성생명 자산 운용본부에서 연기금 자산 운용 경험과 신용카드회사 구조 조정 경험도 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에너지자원 자산운용 사 설립을 주도하여 에너지자원 등 대체투자 분야에 대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JS Horizon

(영입인사)



Kent Wong 호주·뉴질랜드변호사 kwong@js-horizon.com

□ 학력사항

- 뉴질랜드 Victoria University 대학(국제관계학) 졸업 (학사)
- 뉴질랜드 Victoria University 법과대학 졸업(법학학 사)
- 뉴질랜드 Massey 대학 상업학과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법학석사)
- 미국 Minnesota Russian Law and Policy Journal(러 시아어 편집자 과정)

□ 경력사항

- 뉴질랜드 변호사 자격 취득(1998)
-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주(New South Wales) 변호 사 자격 취득(2005)
- 뉴질랜드 Morrison Morpeth 법률사무소(Summer Associate)
- 뉴질랜드 Colmar Brunton Business Research
- 뉴질랜드 의회
- 미국, 샌프란시스코, Sedgwick, Detert, Moran & Arnold, 법률사무소
- 미국지방법원 John R. Tunheim와 Arthur J. Boylan 부장판사실 판사보
- 미국, 샌프란시스코, Hanson, Bridgett, Marcus, Vlahos & Rudy, 법률사무소
- 미국, 샌프란시스코, Barger & Wolen, 법률사무소
- 영국, Jardine Lloyd Thompson Group, 샌프란시스 코사무소
- 법무법인 세종(Summer Associate)
- 법무법인 세화 Sewha Cambodia Law Group in Phnom Penh
- 법무법인 세화 호주·뉴질랜드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호주·뉴질랜드변호사

□ 인사말

Since recently joining Jisung Horizon,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focus on diverse corporate matters, asset finance,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practice, which have been rewarding not only because the work is

challenging but it oftentimes involves the application of more subtle or practical aspects of law to find a legal solution. Reward also comes from working in a collegial environment where there is camaraderie and respect between the lawyers and staff. I appreciate the firm for its professionalism and high standards of practice.

My experience so far has allowed me to gain exposure to both Korean corporate culture and several areas of the law. I have not been disappointed. I can safely say that Jisung Horizon lives up to the high expectations I had for it. The partners and associates are, of course, talented and devoted to their clients, but they are equally devoted to the firm, its staff, and each other. I welcome the chance to build what I foresee to be lasting relationships with people who I can be proud to call mentors, colleagues, and friends.

When I am not drafting legal memos, I like to watch movies, play chess, travel to exotic countries and hunt for hole-in-the-wall restaurants to taste different types of Korean food.

15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7, 11층 Tel:02)6050-1600 Fax:02)6050-1700

강북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599

강남분사무소 (135-9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14층 Tel : 02)2009-7500 Fax : 02)2009-7520

상해 사무소 Room 3305,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84-8-3910-7510 Fax : 84-8-3910-7511

<mark>하노이 사무소</mark> #1603, 71 Nguyen Chi Thanh Str., Dong Da Dist., Hanoi, Vietnam Tel : 84-4-6275-2553 Fax : 84-4-6275-2554